
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 제16호

2019. 3. 21.

건명	논산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 (의원발의)		
제안 및 제출자	서원의원 외 4명	제안연월일	2019. 3. 6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9. 3. 6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- 논산시가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발주, 과업수행, 최종 성과품의 납품·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학술연구용역이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학술연구용역 적용범위 및 역할과 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4조)
- 다. 용역과제의 선정, 용역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6조)
- 라. 위원회의 기능·운영, 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관련 사항(안 제7조 ~ 제14조)

마. 용역실명제,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등 용역관련 사항(안 제15조 ~ 제20조)

바. 시행규칙(안 제21조)

□ 검토의견

- 논산시가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발주, 과업수행, 최종 성과품의 납품·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학술연구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고,
- 위원회 운영을 논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